

제400회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9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12월1일(목)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58)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59)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5)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5)
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49)
7.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4)
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6)
9.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93)
1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08)
1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31)
13.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5)
1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8)
1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5)
1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6)
1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75)
1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0)
2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09)
22.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63)
23.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대안)
24.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22)
2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35)
2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17)
2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4)
28.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01)
30.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17)
3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4)

3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4)
3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1)
3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00)
3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3)
3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6)
3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73)
4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66)
4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6)
4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42)
4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370)
4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36)
4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10)
4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8)
4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3)
5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8)
5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정된 안건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58) ... 3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59) 4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5) 4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5) 4
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6.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49) 4
7.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4) 4
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6) 4
9.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10.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93) 4
1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08) ... 4
1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31) ... 4
13.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1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5) 4
1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8) 4
1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5) 4
1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6) 4
1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75) 4
1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0) 4
2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21.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09) ...	4
22.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63) ...	4
23.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대안)	4
24.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22)	4
2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35)	4
2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17)	4
2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4)	4
28.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29.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01)	4
30.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17)	4
3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3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4)	4
3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4) ...	4
3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1) ...	4
3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3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00)	4
3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3)	4
3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6)	4
3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73)	4
4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66)	4
4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4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6)	4
4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42)	4
4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370)	4
4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4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36)	4
4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10)	5
4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8)	5
4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5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3)	5
5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8)	5
5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전해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지난 환경법안심사소위와 고용노

동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법안들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해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기에 가급적 이석을 자제해 주시고 자리를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58)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59)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5)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5)
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49)
7.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4)
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6)
9.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93)
1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08)
1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31)
13.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5)
1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8)
1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5)
1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6)
1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75)
1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0)
2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09)
22.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63)
23.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대안)
24.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22)
2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35)
2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17)
2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4)
28.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01)
30.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17)
3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4)
3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4)
3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1)
3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00)
3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3)
3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6)
3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73)
4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66)
4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6)
4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42)
4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370)
4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36)

4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10)

4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8)

4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3)

5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8)

5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2항까지 이상 5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법률안들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이자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임이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과 29일 정부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32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품에 들어 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함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의무화하고 화학물질 관련 등록·신고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대수 의원, 지성호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거리종합대

책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통합함에 따라 장거리종합대책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명령 대상 등에 건설기계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노웅래 의원, 김경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부장관이 악취발생 실태조사를 고려하여 직권으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에게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별 법령을 통하여 위탁받아 수행 중인 사업을 공단의 사업 규정에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필요 시 공단 사업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성준 의원, 허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대상에 도시하천유역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이 수자원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김희재 의원, 박진 의원, 박홍근 의원, 이수진 의원, 임종성 의원, 정운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기본계획에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하천공사의 목적에 자연성의 보전·회복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물관리 원칙을 반영하고 반려견 등 등록대상동물의 운동·휴식시설 설치행위를 하천점용허가 금지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송옥주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의 정의를 규정하고 바이오가스의 의무생산자의 범위에 지자체장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배출자를 포함하였으며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부여 및 목표미달성 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하수관리계획에 유출지하수의 관리·이용계획을 추가하고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지원주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대수, 김영진,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지자체장에 대하여 침수위험지역의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지자체의 관할구역 침수피해 위험도 예측분석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 이주환 의원, 이현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륜자동차의 제작 인증 소음도 연계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한 소음·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아동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신정훈 의원, 노웅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시설의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설의 변경 인허가 시 기존의 보험계약 요건 또한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환경부장관이 손해조사 실시를 요구하거나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환경시료의 범위 및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성원 의원, 이주환 의원, 홍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지자체의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도입하고 관할구역 외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초지자체가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기초지자체가 폐지, 고철 등 재활용폐기물의 처리를 별도로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해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김영진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과 22일 정부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8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업훈련 중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별로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박대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험재정의 안정화 및 보험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고액·상습채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낮추어 대상을 확대하고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2차 납부의무를 부여하였으며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공사·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면 보험료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철민·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업신고 시 국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신고의 방법에 비대면 신고방법을 추가하고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들의 유산·사산휴가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잔여 휴가급여는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 외국인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마련하는 등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구

직자의 체류자격을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부로부터 체류자격 등 외국인등록 자료를 고용정보시스템으로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제공받은 자료의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등록 자료 중 체류자격과 체류기간만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해철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심사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를 해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현안질의는……

○위원장 전해철 현안질의는 의결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이수진(비) 위원 법안에 대한……

○위원장 전해철 이수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존경하는 전용기 의원님께서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안의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에 미래세대의 주체로서 아동을 추가하는 안 적극 동의합니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출범한 2기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이 탄소중립 기본법에 정해진 구성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법 적용에 대한 환경부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환경부장관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현행 탄소중립 기본법은 제3조에서 기본 원칙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또 15조의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청년, 노동자, 시민사회 등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탄소중립 기본법 제15조가 다양한 사회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강행적으로 규정한 취

지는 탄소중립은 민주적인 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때 비로소 탄소중립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위원회가 정부 연구기관 연구자와 대학교수 그리고 기업인들 중심으로 구성되며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각 사회계층을 대표할 수 있게 구성하도록 강행적으로 규정한 탄소중립 기본법 제15조 5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은 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이 소관 기관입니다. 소관부처로서 심각한 법률 위반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를 법률 규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의향과 계획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위원회 구성 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법을 국회에서 입법하면 행정부는 이를 집행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지를 표명해 주셨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입맛에 맞춰서 위반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삼권분립에 대해 이해 부족인지 도전인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입법부가 정한 법률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입법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장관께서 잘 새기고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개선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위원회와 잘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해철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없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안질의시간은 따로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해 주실 부분은 가능한 한 저는 위원님들이 진술하거나 발언할 때는 위원장으로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중지하거나 중간에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그대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요. 위원님들 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안으로 제안할 의사일정 제23항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유인물을 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항을 순서대로 묶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조부터 4조까지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조부터 제16조까지 의견 있으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7조부터 제21조까지와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으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한두 분이라도 좀 크게 말씀을 해 주시면 진행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의결에 앞서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은 지난 11월 23일 소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전체회의에서의 공청회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9항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13항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20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23항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28항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과 제3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31항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과 제3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35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0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41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45항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과 제4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49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과 제5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52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안 중에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 추계를 의뢰할 예정입니다만 본회의 부의 이전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서를 회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전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들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정안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대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에 대한 재정·기술적 지원 등을 바탕으로 유럽과 같이 바이오가스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여 폐기물 처리의 지역간 불균형을 방지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폐기물 수거·처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한국환경공단법,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천법, 지하수법, 하수도법, 소음·진동관리법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등 12개 법률의 개정안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 대기, 악취, 소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들이 적기에 시행되어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환경부 소관 법안의 심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전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임이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해철**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존경하는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의견을 모아 주신 김영진 고용노동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안은 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하기 위한 직무능력은행제를 도입해 산업현장의 능력 중심 채용을 활성화하고 직업훈련교사의 결격사유로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금근로자, 예술인 등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본인의 피보험자격을 직접 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타 입법례를 참고해 월별 보험료의 일할계산 규정을 정비하였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가 관리하는 외국인 구직자의 정보를 제공받아 취업지원을 효율화하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세심하게 고려하면서 차질 없이 후속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해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법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한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거수해 주시면 질의 순서 등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하실 분들 일단 거수……

○진성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해철 잠깐만요.

일단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잠깐만 거수하고 계십시오.

그러면 다섯 분 여섯 분 하나까요, 지금 배포해 드린 질의 순서에 기해서 하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먼저 진성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가 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서 최근에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손해

배상·가압류의 남발, 남용을 방지하고 제한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심사하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법안의 상정 여부를 두고 여야 간에 이견이 발생하고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은 퇴장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저는 환경법안소위에 소속되어서 노동법안소위의 상황을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걱정스럽고 또 유감스러웠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또 이런 살인적인 손해배상소송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하고 지금도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서 지난 국정감사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한 과감한 결단과 손질이 필요하다는 점이 누차 촉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노동법안소위가 파행을 겪었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이대로 가서 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아주 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노동법안소위의 심사 상황을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여야 간사들께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해서 하루 빨리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자기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과업 등 정의행위를 벌인 것과 관련해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해철 잘 알겠습니다.

현안질의 전에 위원장으로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지난 2009년에 쌍용자동차 파업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서 어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헬기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 등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의 과잉진압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노조의 불법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쌍용차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대항하여 77일간 파업을 벌인 지 13년 만이자 2심이 선고된 지는 6년 5개월 만입니다. 이로써 지난 13년 동안 불법과 폭력의 오명을 안은 채 지내온 쌍용자동차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9년 5월 사 측의 대규모 정리해고로 시작된 쌍용차 사태는 우리나라 노동자에 깊은 상처를 남긴 비극적 사건입니다. 앞서 1심과 2심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던 관계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정리해고로 인한 생활고, 손해배상, 폭력진압 트

라우마와 우울증 등 큰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대한민국 경찰은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쌍용차 농성진압에 대해 정부가 노사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사건을 경찰의 물리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사건이라고 발표하고 경찰청장은 사과까지 했습니다. 쌍용차 사건의 경우 경찰 등 정부 책임이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간 많은 위원님들이 국회에서 국가폭력의 부당성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이은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제출해서 국회에서 통과도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의원님들 역시 노력해 온 만큼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결의안에는 정부의 소송취하, 노동자 및 그 가족들의 실추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위법·부당한 지시로 강제진압 현장에 투입됐다가 부상을 입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찰에 대한 치유 노력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이 자리에 계신 정부부처의 관련자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추가 조치에 나서 주기를 말씀드립니다.

특히 쌍용차 사태를 계기로 해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발의되어 있는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 간에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국민분들께서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방금 의사진행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회적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국회가 논의를 시작한 만큼 앞으로 법안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내용과 그리고 절차와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위원장으로서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그 논의 역시 실질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해철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께서 기왕에 쌍용자동차 점거농성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점거파업 관련 한 어제의 대법원 판결은 집회·시위가 불법이어도 공권력의 과잉진압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결이지 노조의 폭력·과괴행위를 수반한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준 판결은 아닙니다.

노조의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불법점거농성 시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분사하거나 하강풍을 옥상 농성 노동자들에게 쏜 것은 위법일 수 있다며 헬기 파손 책임까지 노동자들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경찰 부상 관련 치료비, 차량 관련, 진압 장비 관련, 휴대용 무전기 관련 손해배상책임 부분에서는 원심을 인용해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공보관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도 이번 판결의 의미는 불법적인 농성 진압에 관련된 경찰관의 직무 수행 및 경찰 장비의 사용에 대하여 그 재량범위 및 한계에 관한 기준의 제시라고 했습니다.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이며 어제 고용노동소위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검토 시작한 노조법 2·3조 개정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은 우리 법원이 무리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입증입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를 통해서 사측의 무리한 손배·가압류는 충분히 걸러지고 있고 노조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제 민주당에서 노조법 제2조·3조 개정을 위해서 고용노동소위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현재도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있고 정당한 파업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조법 제2조·3조 개정안은 일부 극소수인 민노총을 위한 민노총에 의한 그런 민노총 방탄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위원장 전해철 현안질의 있으니까요, 의사진행 발언하시고 또 질의하시는데……

○김영진 위원 간사님 발언했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전해철 예, 김영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어제 진행이 됐었던 고용노동법 안소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실제로는 법안 상정까지 반대하는 경우가 국회에서는 상당히 드문 형태였습니다. 논의 과정이나 표결 과정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퇴장하거나 하면서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경우가 있었고 정당의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는 근래에 보기 드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래서 그걸 국회 파업이라고 얘기했고요. 국회 파업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얘기했듯이 즉시 논의개시명령이 떨어져야 될 사안이었다고 보고 저는 그런 상황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자유롭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국힘에서는 노조법 2·3조 관련한 논의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높은 가이드라인을 줘 버리니까, 한마디 하니까 딱 얼어붙어서 자유로운 논의를 못 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서 더 이상, 국힘 의원들과 원내 지도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지시사항을 빨리 거둬들여서 합리적인 논의를 하는 게 아마 환노위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

어제 정부 측의 답변이나 내용을 보면 경총과 국힘의 입장, 대통령의 입장과 크게 다른 바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 2·3조 관련한 법 개정은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 그리고 노동현장의 문제를 우리 제도권 내에서 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노사 간의 극렬한 대결로 손배와 고소 고발을 줄이고 산업현장의 평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끔 도입하자 그런 취지로 발의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논의를 통한다면 여야 의견들을 수렴해서 논의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여야 위원님들 교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고 현안질의는 말씀드린 대로 또 현안 때 해 주시고요.

박대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수 위원 조금 전에 김영진 간사님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손배소·가압류 관련해서 얘기 들은 바도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이겁니다. 이거 해결되면 손배·가압류? 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파업도 없을 거고 임금 격차 줄여서 가는 게 목표인데 이상하게 손배·가압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이상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절대 그런 지시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당의……

(웃음소리)

아니, 진짜 웃지 마세요!

우리 당의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런 적 없어요. 다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이거 빨리 하자, 이게 우리 당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는 거지 손배·가압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뭐 했다? 그런 말씀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국회가 논쟁하고 싸움 나고 얼굴 붉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해철 이수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비) 위원 입법부와 행정부의 기능이 분명히 다르고 또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의 발언은 상당히 입법부를 모욕하는 발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행정부 수반을 대신해서 대변인처럼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저는 그렇다면 위원장님께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중구조 해소하고 싶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약계층 노동자들, 힘 없고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주문을 하시고 행정부도 뭔가 하겠다고 의지를 밝히셨다면 우리 국회법에 선입선출 있지 않습니까? 이미 2년간 발의된 법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안소위에 올리시면 됩니다, 선입선출에 의해서.

일하는 국회법에 따르면 매달 두 번에서 세 번

전체회의, 소위원회 열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사 간 합의가 안 되면 법안 상정하면 안 된다 이게 법에 있지 않습니다. 국회법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그것을 제안드리고, 우리 국회 환노위에서 법안 상정과 관련해서 선입선출이 지켜져서 차별받는 의원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윤건영 의원이라든지 이학영 의원님의 법안 통과는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환노위 얼마 안 되신 분들도 8월 달에 발의하시고도 다 올라와 가지고 통과가 되고 그랬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쟁점이고 어떤 게 비쟁점입니까? 그걸 누가 구분한다 말입니까. 저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차별적인 잘못된 관례 이런 것들이 깨진다면 진짜 노동자들에게, 우리 국민들께서 필요한 법이 분명하게 잘 정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쌍용차 노동자들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도 환영하는 바고요.

관련해서 제가 세브란스병원의 노동조합활동할 때 간호사들이, 그분들 정말 힘들고 어렵게 길에서 투쟁하고 죽어 갔습니다. 가서 영양주사도 놔드리고 그분들 말씀도 듣고 그리고 아이들과 놀아 주고 헌옷까지 모아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에 대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도 했었고요.

거의 어려움이…… 우리 국민들께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저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인지하고 더 이상 손배·가압류로 인해서 고통받는 노동자들, 억울한 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 이 취지가 분명하게 국회 안에서 실현되어야 되는데, 아까 김영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부차관께서는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정도로 반대 의견이 너무나 많은, 이렇게 진행된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 국민들께 죄송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전혀 협조적이지 않고 반대 취지의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위에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노동부가 전향적으로 법안에 대한 필요성과 앞으로 어떻게 해결책을, 대책을 마련하고 또 수정안을 만들어 낼지 좀 책임감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해철 예, 알겠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실제 고용노동부가 손해배상소송·가압류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한참 있다가 우리가 국감을 앞두고, 국감 첫날인 것 같아요, 그날 받았는데 고용노동부가 자체조사 없이 민간단체인 손잡고가 수집한…… 민간단체인 손잡고는 작은 규모의 민간단체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민주노총을 통해서 입수한 소송 자료만 가지고 아카이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고용노동부가 만든 자료예요. 추가적인 조사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계속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94%가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애초에 지시한 대로 고용노동부는 자체조사를 해야 된다, 손잡고라는 민간단체 아카이빙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손배·가압류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도 어제 법안을 심사하면서 정말 어떤 벽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충분히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견은 이견대로, 걱정되는 부분은 걱정되는 대로 토론을 통해서 이견을 좁혀나가는 건데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다 퇴장을 하셨고 정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 어제 있었던 쟁점 열 가지에 대해서 다 반대, 다 반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활한 논의를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고용노동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거 아니면 어떻게, 전체적으로 10여 명의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요

공동발의한 의원을 치면 21대 국회의원 중 3분의 1 이상의 의원들께서 동의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의껏 또 진심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건건이 다 반대의견을 표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고, 위원장님께서 이후의 제대로 된 법안 심사를 위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주의나 권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해철 의사진행발언하지 않으신 위원님들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는 걸로 하는데 거수가 좀 늦어서, 그러면 우원식 위원님 하시고 지성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쌍용자동차 노동자에게 덧씌워진 불법, 폭력의 먹칠을 닦아 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이제는 국회가 손배·가압류와 같은 이런 살인적인 일들을 막아야 되는, 그래서 노조법 2·3조 개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웃었는데 왜 웃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라 그런 얘기만 했다, 그 얘기 좋은 얘기입니다. 이중구조를 개선하려고 하면 하청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 가야 이중구조가 개선되는 겁니다. 하청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을 사장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겁니다. 사장이라고 부르고 교섭하면 불법이라고 낙인 찍히는 겁니다. 교섭도 못 하는데 무슨 권리가 보장이 됩니까?

따라서 저는 이중구조 개선하는 데 핵심적인 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된다고 하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에는 반대하는 그게 참 저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해서 실소를 한 겁니다. 그런 실소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서로 상대하고 있는 국회의원한테 삿대질까지 하면서 웃지 말라고 엄포를 놓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태도다.

저는 이번 기회에 윤석열 정부가 정말 노동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제대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노동자들, 조직 바깥에 있기도 하고 또 조직돼 있

지만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질적인 교섭권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번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해서……

○임이자 위원 아니, 그분들이 노조가 있어요? 조합원도 아닌데 그분들이 어떻게 교섭을 하겠어요?

○우원식 위원 제가 발언하는데 얘기하지 마세요!

○임이자 위원 아니, 그러면 왜 먼저 웃어요? 박대수 위원님 얘기할 때 왜 먼저 웃었어요?

○우원식 위원 웃지도 못해요?

○위원장 전해철 자, 다른 위원님들 얘기할 때……

○임이자 위원 먼저 웃고 비웃었지 않습니까.

○우원식 위원 그러면 비웃을 만하지요, 그게!

○위원장 전해철 잠깐 있으세요.

○임이자 위원 그게 왜 비웃을 만합니까, 그게!

○이수진(비) 위원 자격지심입니까?

○위원장 전해철 우원식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수 위원 제가 좀 할게요.

○김영진 위원 아니, 임이자 위원님은 왜 항상 말할 때 해 가지고 자꾸 싸움을 붙입니까?

○위원장 전해철 기다리세요, 잠깐.

○우원식 위원 남이 말할 때는 끼지 마세요. 하고 나서 발언권을 받아서 하세요.

○임이자 위원 먼저 비웃지 마세요. 태도가 문제가 있잖아요!

○김영진 위원 아니, 말 좀 끼지 마세요, 위원님!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시네. 서로 규칙을 지켜서 발언하시면 되지.

○위원장 전해철 자 위원님들, 이야기 들으세요.

○우원식 위원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도 이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려면 바로 이런 것들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 것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그게 노조하고 뭘 상관이 있어, 그게!

○김영진 위원 법치가 무너졌어, 아주 그냥. 윤

석열 법치가 개판이야.

○임이자 위원 뭐가 개판이야, 뭐가? 말 다 했어요, 말 다 했어?

○김영진 위원 마음대로 그냥 자기들만 하는 게 법치야? 안 하기로 했으면 지켜야지 말이야.

○위원장 전해철 잠깐만요, 잠깐 기다리세요.

자 위원님들, 임이자 위원님, 다른 위원님이 발언할 때 하지 마시고 있다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떤 그런 것을 하면, 발언하다가 하면 지적하시고 또 끝나고 이야기하세요.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이 안 시켜 주잖아요, 한 번 하고 나면, 우리 숫자 적은데.

○위원장 전해철 제가 지금 뭘 안 시켜요?

○박대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임이자 위원 두 번 안 시켜 주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해철 제가 이야기할 때 두 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안 하신 위원님들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의사진행발언하라고 한 겁니다.

○임이자 위원 알겠습니다.

○박대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전해철 잠깐만요. 지금 지성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고 그다음에 하세요.

○박대수 위원 왜냐하면 마침 말씀하시니까, 빨리 끝낼게요.

○위원장 전해철 위원님, 보세요. 진행이라는 게 있고 그렇게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말대꾸가 서로 되니까……

○박대수 위원 그래요.

○위원장 전해철 지성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성호 위원 저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정쟁으로 가는 것이 맞냐는 질문을 드리게 되고요, 또한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나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김영진 간사님께서…… 제가 많이 존경합니다, 김영진 간사님. 그런데 말씀하시는 도중에 대통령께서 마치 지시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씀해서 가지고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저는 국정감사에 있어서도 정말 독재국가에서 보지도 못했던 노동권 보장되는 현실에 있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경제시스템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약자들의 눈물도 닦아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국회

의원들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의논을 통해 가지고 잘 조율된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본질에 들어와서 노동권만 존중한다 했을 때 그러면 기업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든가 이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청문회도 열었던 것이고 국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이고 계속된 의견들이 오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행정부, 특히 행정부 수반이 지시를 내려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솔직히 알 수 있을 만큼은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해서 토론이 필요한 것이어 가지고, 쟁점이 돼서 조금 밀렸거나 또한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이것을 파업으로 몰아간다는 거 이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환경입니지만 저도 오전 오후 법안소위에서 열심히 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함께 일하는 여당·야당의 입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위원들의 입장에서 용어라든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 없으니까 지금의 정쟁으로 가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좋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가 지켜 주실 건 좀 지켜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에서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야당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해철 추가로, 그러면 일단은 박대수 위원님……

○박대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전해철 잠깐만요.

박대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까지 듣고 의사진행발언은 마무리하고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수 위원 지성호 위원님께서 아주 점잖게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의정 또 위원회 활동하면서 가급적이면

서로가 얼굴을 붉히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바라고 있고 희망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지 못한 말씀을 김영진 위원께서 ‘대통령이 그렇게 하니가 일어 가지고, 쫓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상당히 이견, 들은 바도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노동 이중구조 개선을 공약으로 크게 걸었어요.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그게 먼저 아니냐 했더니 우원식 위원님께서 손배 관련해서 이게 먼저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개인의 생각을 오늘 말씀을 드린 건데 거기서 비웃어 대니까 제가 비웃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 부분인데……

진짜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나도, 만약에 내가 그 순간 이렇게 했다면 제가 미안하게 생각, 사과를 드리고. 그런데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다선 의원 아니시겠습니까? 어른답게 행동을 해 주시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판 얘기한 거 없습니다. 이중구조가 먼저냐 손배가 먼저냐 이런 부분은 함께 앞으로 풀어 가야 될 문제들인데, 그래서 어제 그런 일들이 우리는 대통령 공약이 이러하니가 이것부터 하려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쪽에서는 또 손배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다 이거지요.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얘기 받은 바도 없고 또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관련해서 공약 사항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해철 의사진행발언 마무리하면서 위원장께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것에 답변도 드리면요.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각 위원님들께 이야기한 것은 제가 반복하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잘 참작해서 앞으로 회의진행할 때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위 순서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환노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환경 362건 노동 685건, 전체 1047건입니다. 앞으로 21대 국회 임기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이걸 모두 심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

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도 당연히 모든 법안을 심사할 것을 두 분의 간사님 또 소위원장께 부탁 말씀을 드렸고요 또 소위 위원님들께도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서 아시다시피 11월, 12월에 우리 환노위는 실제로 어느 상임위보다 소위와 그리고 의사진행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 주신 소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 감사드리는데요.

순서 관련해서는 저도 선입선출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야를 떠나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국회가 해 왔던 것이 정부에서 좀 더 필요한 법안이다, 정부의 행정 집행을 위해서 시급한 법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여기 계시는 장관분들께서 또 부처에 계신,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당연히 관례와 관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법안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필요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선입선출의 원칙, 다만 그 부분에 대해 정부의 입장이 있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소위원장님들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에서 좀 더 노력할 것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노력이 있지 않다면 당연히 의원님들의 입법 발의도 존중되어야 됩니다. 입법 발의한 의원님들의 법안이 모두 1000여 건이거든요. 그런 부분의 노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저는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또한 예외가 간사분들이 특별히 지정하는 건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분들이 그 정도의 재량권은 있어야만 여러 가지 당의 입장 또 위원님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간사님들이 협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세 가지 원칙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안으로 상정해서 논의했습니다.

이런 기준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또 수년간 해 왔던 관례와 죽 해 왔던, 지켜왔던 기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되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또는 필요성이 있으면 일차적으로는 소위원장님들께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검토를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가압류 또 손해배상 실태에 대해서 노동부가 보고한 건에 대해서 저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판례와 선례를 모두 다 검토를 하기는 쉽지 않아서 민간단체라 하더라도 협조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 노력이라도 해서 정부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것은.

다만 이은주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자료를 민간단체에서 받다 보니까 자료의 편중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을 했고 또 만약에 그런 부분 이외에 정부가 좀 더 노력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자료 역시 보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가로 그와 같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안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는 신청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순서대로 하는데,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장관님, 어제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는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 더구나 국민안전을 불모로 하거나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노조법상 파업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현행 법률상 노조법상 파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단 운송 거부라고 봐야 됩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면 불법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지금 노동조합법에 의한 불법은 아닙니다.

○우원식 위원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다른 법의 규율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노조법상의 불법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규율 대상이 아니니까.

○우원식 위원 아니, 노동부장관께서 나가셔서 막 이야기하시길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우원식 위원 노동부장관도 나가셔서 이야기하

시고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시길래 파업인가 아니면 노조법상 불법인가 또 노조법상 파업인가를 물어봤는데 노조법상의 파업은 아니고 불법도 아니다 그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노조법상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게 이미 2011년 대법원 판례가 그런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우원식 위원 그런데 이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이 노조법상 파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법적 용어로서 파업, 노동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거기 지금 화물연대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철도, 지하철 뭐 이런 부분들이……

○우원식 위원 화물연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요, 제가. 지금 화물연대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정부의 기초가 지금 현재 노동계……

○우원식 위원 여기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때는 노동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개인사업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니까 불편해지니까 그때는 또 노동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 이중적 태도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 더 물을게요. 대통령실은 ‘저임금 노동자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이다. 그거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화물연대에 소속된 분들 그분들이 열악한 처우에 있는 사람입니까, 소위 말하는 귀족노조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화물연대요?

○우원식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화물연대는 일단 현행 법상 노동조합은 아니고요.

○우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열악한 처우에 있는 분인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그 열악하다고 하는 부분이……

○우원식 위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일자리를 뺏는 그런 귀족노조인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열악하다고 하는 기준이 어디 있는가……

○우원식 위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경향신

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16년 차 철강화물 노동자 사례를 보니까 하루 16시간 운전하고 700km 운송을 하는데 경상비가 1400만~1000만 원, 유류비·고속도로통행료·보험료 이것 빼고 나면 월 삼사백만 원 가져가요. 16년 일해서 16시간 운전대 잡아서 삼사백만 원 받아 가는 것 이것이 잘 살고 귀족노조다, 귀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열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열악한지 아닌지 비교 기준이요……

○**우원식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그러니까……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 홍보수석이 이야기한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 말이 다 틀렸어요. 더더군다나 국민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 일자리 빼앗는 파업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사정을 잘 알잖아요, 지금. 그러면 거기다가, 홍보수석이나 대통령한테 이거 갖고 대책 논의할 때 ‘그것 파업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열악한 사람 일자리 뺏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지금 지하철하고 하여간 철도 이런 것들이 같이 연대투쟁을 하는……

○**우원식 위원** 장관께서 역할을 잘하셔야 됩니다. 장관께서 그렇게 역할을 하시면 노동부장관으로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노동판에서 그야말로 잔뼈가 굵으신 분인데 이런 법적인 잘못된 용어를 쓰는 것도 그냥 방치해 놓고, 결국은 잘못된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지금 현재 노동법적으로는 저희가 분명하게, 대책회의를 하거나 정부에서 논의할 때 이것은 현행 노동법상 규율을 받지 않으므로 파업은 아니고 집단 운송……

○**우원식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운송개시명령을 위반해서 화물자동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국토부장관이 나서서 엄단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우원식 위원** 운송개시명령도 이번에 처음 해보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그렇습니다.

○**우원식 위원** 위헌 소지도 있다는 거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거부 시가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원식 위원** 안전운임제를 보장하라 이게 왜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지금 국토……

○**우원식 위원** 생존권적 요구를 하고 있는, 안전운임제를 보장하라고 하는 정당한 사유 때문에, 그게 보장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조법상 파업도 아니고 노조법상 불법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고 이미 2011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거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운송개시명령을 내려서 그걸 위반해서 불법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처벌하겠다는, 이게 나라입니까?

저는 말이에요, 제가 요즘 예산심의해서 국정을 상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 과정을 보면서 느낀 거는 정권이 바뀐 지 불과 몇 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라 꼴이 어떻게 이렇게 엉망이 되는가. 이것 윤석열 정부가 무능을 넘어서 탈선을 하고 그리고 노동정책, 노사관계 분야는 갈등을 넘어서 탈출구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여기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해요. 정말 이렇게 하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 을지로위원회 할 때 같이 서서 손배·가압류 그 기자회견할 때 강단 있고 용기 있었던 한국노총 사무총장 그 이정식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고용부장관 이정식은 권력에 아부하고 노동자 탄압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내가.

○**위원장 전해철** 우원식 위원님 정리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원식 위원** 예, 그러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저는 정부에서 화물자동차 운수법에 따라서,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이미 화물연대 예고 이전부터 저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를 주지 않는 그러한 갈등 해결 방식과 노사관계 방식이 우리 사회에 정착돼야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노사 모두 그것들을 존중하도록 촉구를 해왔고요.

어쨌든 지금 우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살려서 최대한 빨리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철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비) 위원 고용노동부장관님, 지난 30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이에 대해서 양대 노총이 똑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담아서 논평을 냈더라고요. 요지는 결국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아니다, 이것은 중대재해기업 면책 로드맵이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중대재해로 생명을 잃는 것은 노동자들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권리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최소한의 의사 반영도 되지 않은 정부 정책은 소위 양꼬 없는 찌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로드맵 만드는 과정에서 양대 노총을 포함해서 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이 내용들이 완성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결론 났을 때도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제가 전문가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전에 로드맵의 구체적인 초안이라도 나왔을 텐데 이것 펼쳐 놓고 양대 노총의 제대로 된 의견 들었는지 그것 여쭙보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충분하게는 아니겠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그 말씀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양대 노총에 확인해 봤습니다. 산안본부 실·국장들과 통화를 해 봤는데 이 로드맵 관련해서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토론회도 그렇고 11월 29일 양

대 노총 관련자들을 불러서 로드맵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것 외에는 로드맵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구경조차 하지 못했다가 양대 노총 공통적인 하소연이었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로드맵을 만들면서 어떻게 양대 노총 얘기도 듣지 않고 반영도 안 하고, 저는 이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초안이 만들어졌으면 그걸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통보식으로, 이것 굉장히 잘못된 공무원들 관례 아닙니까? 이것 개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로드맵 내용 중에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이 설명자료에 ‘중대재해 발생 시에 사업중지 기간, 범위, 해제절차 등 합리화’라고 명시를 하셨습니다. 장관님 아시겠지만 작업중지는 사망사고 발생 시에 위낙에는 전면 작업중지가 원칙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랬다가 경영계가 강력한 요청을 했지요. 그래서 대형 폭발, 화재, 붕괴 등의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하게 2020년 산안법에서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정까지 된 것을 또 합리화시키겠다는 취지인가요?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지난 SPL 사업장 사망사고 때 교반기가 계속 가동됐지 않습니까? 그게 노동자들에게 사고현장 옆에서 작업을 계속 시킨 것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공정 전체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노동자들이 그 트라우마가 상당했다, 그래서 사회적·국민적 공분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장관님, 로드맵에서 얘기하는 합리화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경충이 올해 8월에 발표한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작업중지명령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보고서 내용 이걸 그대로 반영해서 그것대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로드맵에 담긴 내용은 실질적으로 중대법이 들어온 이후에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국정과제는 시행령 개정이었습니다만 이것으로 중대재해를 줄일 수가 없겠다라고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이런 취지

로……

○이수진(비) 위원 지금 그렇게 길게 말씀해 주시면 좀 곤란하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그러면 말씀 다 하신 다음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재해조사 의견서, 재해 등의 기술적 원인 조사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조사 시작일 7일 이내에 노동부에 제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노동부에다 제출할 재해조사 의견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출해야 되지요? 이것 국정감사 때부터 지속적으로 자료 요구했는데 미작성을 이유로 제출을 안 하는데, 이렇게 지침에도 나와 있고 하계끔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작성했는데 노동부 눈치 보느라고 못 주는 건지, 노동부만 보고 제출 안 받은 것처럼 하고 계시는 건지, 왜 국회에다 제출 안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리고 이것 수사 관련 자료니까 제출 불가 이런 취지로는 얘기하지 마세요. 다 받아 놓고 그러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로드맵의 취지는 유일하게 하나의 목적인데, 라고 하면 어떻게 현장에서 중대법 제정 취지가 제대로 살려져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감축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그 방법으로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규율에 따른 예방체계인데, 그 자율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그래서 그 의지의 표현으로 사실은 다른 예산은 삭감이 됐습시다라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것은 10% 증액이 됐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라졌던 산안법 조항 중에 선제적이고 예방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것도 저희는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TF를 구성해서 무엇이 실효적으로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합리화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노사 양측으로부터 많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노동계조차도 심지어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려놓으니까 우리 지금 일을 못 해서 임금이 떨어져서 죽겠다는 얘기도 있고, 사용자들도 물론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그러니까 동일한 작업 이게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작업조건, 환경, 작업방식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조사 의견서 이 부분이 지금 자료제출 요청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수진(비) 위원 받으셨지요? 갖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아니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고요. 노동부 눈치 보면서 이런 것들, 자료제출 미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방금 설명하신 것 제가 잠깐, 예산을 반영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뭐 예산 반영에 대해서……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클린사업장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그렇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라든지 사망사고가 지금 빈발하고 있고 실제로 중대재해 처벌법이 거기까지 포괄하고 있지 못하지요, 유예기간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에 진행이 안 된 것은 우리가 법안에 넣지를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합리화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사실은 작업중지가 기업들에게 가장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해철 이수진 위원님, 추가로 1분 하실래요, 아예?

○이수진(비) 위원 예, 추가로 1분만 좀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철 예, 그러세요.

○이수진(비) 위원 실제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잘하면 노동자들이, OECD 최고의 산재공화국이

라고 일컬어지는 사망사고 최고 대한민국 이런 결론이 났겠습니까? 자율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강제하고 때로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엄하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봐주고……

기업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작업중지로 인해서 기업 경영에 손해를 끼친다, 어쨌든 금전적인 손해를 끼쳐야 기업에서도 뭔가 일을 하려고 또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차 떼고 포 떼고 봐주면……

이런다고 그래서 중대재해 사망사고 줄어들겠습니까? 저는 이게 방향이 매우 잘못됐다, 기업의 자율적인 책임도 이미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는데 안 됐기 때문에 산안법을 넘어서 중대재해 처벌법을 만든 겁니다. 노동부에서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환노위에 배포한 로벤스 보고서에도 이 취지는 자기규율, 그 대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1220개 법률 조항과 679개의 세세한 산업안전기준 규칙 이런 것들을 타율적으로 처벌을 의식해서 기업들이 하나하나, 현실에 맞지도 않고 현황화되지도 않고…… 신기술이 얼마나 빨리 들어옵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작동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자율로 하겠다라는 것은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방할 수 있게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엄하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TF를 구성해서 내년 상반기에 로드맵을 구체화시키겠다는 것이고.

합리화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사 모두로부터 작업중지를 했을 때 논란이 있어서 그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작업환경, 작업방식 모든 것들을 구체화해서 현재와 같은 동일한 작업의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경우에 작업중지를 하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수진(비) 위원 아니, 노사라고 그러시는데 양대 노총도 안 불러 놓고서는 왜 노사라고 표현하십니까.

○위원장 전해철 이수진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이수진(비) 위원 양대 노총에서, 총연맹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전해철 장관도 압축적으로 답변하시고, 정리하시고 추가로 필요하면 또 하시고요 그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기 위원 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왜 이렇게 노동자랑 싸우는 것 같을까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전용기 위원 노동자랑 굉장히 많이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후보 시절에 노동계를 방문했을 때 ‘노동자는 나의 친구고’ 이런 걸 강조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집단적으로 조직화되고 정치적 목소리를 많이 내는 이런 분들이, 물론 법을 준수하면서 합법적으로 할 경우에는 권리를 존중해주겠지만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전용기 위원 노동자들이 대부분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먹고살자고 하는 거고 본인의 기본권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치적 목소리라고 우리가 단언해 가지고, 지금 친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한테는 협박 비슷하게 ‘일몰제 완전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친구라고 이야기해 놓고 협박하고 싸우고 이러니까 노동자들을 적대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먹고사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남한테 피해를 끼칠 수도 있고 국민경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크게 고려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을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화물연대하고 국토부와 의 교섭이 40분 만에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남한

테 피해를 안 줄 수 있게 정부가 충분히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고 그 조정 역할을 하라고 정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장님 뭐 하십니까. 그것 대화하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분 지금 어디 계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지금 경사노위에서도 이런 갈등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도록 팀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용기 위원** 아니, 12명 있던 분들 다 해임하고 본인 팀 다 꾸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이미 대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저희는 생각 안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대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사노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께서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지금 제대로 역할할 준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할 때 장관께서는 무슨 의견 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같은 의견입니다.

○**전용기 위원** 업무개시명령을 해야 된다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전용기 위원** 지금 파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했고 너네가 똑바로 업무를 안 할 때에는 우리는 있던 것까지 뺏겠다고 정부가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 실제로 업무개시를 안 할 경우에는 또 법적 책임, 법치주의 얘기하면서 강행 처리하시겠지요. 그러면 그분들 면허 취소되고 벌금 부과되고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되고, 누가 일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지금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 대화하지 말자고 협박해 놓고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지금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라든가 대외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집단 운송 거부를 통해서 일정하게 정부랑 합의한 부분이 있고 국회에서 논의할 내용들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경제상황이 어려운 중에……

○**전용기 위원** 아니 장관님, 무슨 말인지 알겠

는데 법치주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좋아하는 법치주의가 뭡니까? 시민보다 오히려 권력자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치주의를 이용해서 권력자가 본인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일 똑바로 안 하면 내가 법치주의적으로 있던 것 다 뺏겠다고 하는데 무슨 대화가 됩니까. 권력자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겁박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기본권 행사도 일정한 제약이 있는데요, 지금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경제나 다중의 안녕과 생명을……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대화가 중요한데 그 사람들은 대화가 안 통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건 아닙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정부가 대화가 안 통합니다. 다른 사람들 피해 주지 않게끔 해라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피해를 주고 있어요, 정부가.

그리고 피해를 안 줄 수 있게끔 그 상황 자체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게만 포커싱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대화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경사노위원장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회적 대화 어디까지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관께서도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대화가 되고 있지 않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역할 못 하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어떻게 역할하실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방관서장들 포함해서 전국적인 단위에서 정부의 정책기조 그다음에 법 테두리 내에서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계속 설득을 했고요, 국토부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국토부랑 보조를 맞추면서 저희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할 일이 있는지 더 챙겨 보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장관님의 적극적인 역할은 노동

자 편 드는 겁니다.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노동자 편 들어 가지고 노동자가 이야기하는 것 듣고 정부에다 전달하고 그게 적극적인 역할이지요. 그 사람들을 가해자로 모는 게 아니고 노동자 편 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도 못 하면서 그 사람들, 무슨 대화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노동자 편만 드는 것 그리고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노사관계나 갈등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기준, 원칙하에서 조정을 하고 조율을 해야지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해철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장관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한 첫 법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 의사진행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법안심사 자리에서 정부의 태도, 대단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개정안이 대략 열 가지 사안인데요 정부 모두 반대했어요. 장관께서는 실제로, 어제 미상정된 고민정 의원안을 포함해서 1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자 포함하면 100여 명이 넘습니다. 이 의원들이 전혀 불필요한 법안을 아무 이유 없이 제출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이은주 위원 솔직히 저도 압니다. 제 안대로 100% 수용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하고 심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단 하나의 대목에서라도 ‘국회랑 논의를 진행해서 대안을 만들어 오겠다’ 이런 의지 한 번도 표시하지 않았습시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지만 ‘이런 건 용산의 오더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혹시 노란봉투법 심사 관련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라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물었어요. ‘거부

권 행사하신다는 얘기 하셨냐?’, ‘아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셔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혹시 대통령실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법안심사 반대하라고, 이런 이야기 나누신 적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은주 위원 윤석열 정부,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웠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시는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94%가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해 주셔야 합니다. 손잡고 아카이빙 사용했으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잖아요. 잘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 통계가 아까 얘기한 ‘94% 민주노총 사업장’, ‘민주노총에 의한, 민주노총을 위한 손배·가압류’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도록 고용노동부가 해 주셔야 됩니다.

약자와의 동행, 노동시장 약자인 하청·간접고용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사용자들과 일체 교섭을 할 수 없어서 바로 그 사회적으로 최약자인 최저임금노동자들이 470억씩 손배청구를 당하는 현실, 이 현실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말씀하시면……

○이은주 위원 아니,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그게 결과만 가지고 보면 470억 손배·가압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은주 위원 아니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여쭙봤잖아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문제는 있을 수 있지요. 사백칠십……

○이은주 위원 다시 한번 요청드릴게요.

정부 입장에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이견도 있을 거지만 그 이견을, 입장차를 서로 좁혀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의회정치 아닙니까.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야당과는 절대 일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 아니시라면 다음번 법안심사소위 때는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둔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오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입장 얘기해 주세요. 저 질의할 게 또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또 하시면 제가……

○이은주 위원 아니요, 고용노동부가 아니어서요.

법안심사 관련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그런데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이게 중대하고 심각하고

신중하게 가야 된다는 취지일 것 같은데 지금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법 내에서 그리고 법 간의 정합성과 현실 적합성 문제 때문에 이것 하나하나를 가지고 따질 부분이 아니고 전체를 통으로 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아마 법안심사에서 그런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이해하고요.

아까 실태조사 결과는 전해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민주노총 아카이브, 한국노총 법률원, 언론 이걸 최대한 다 동원해서 한 게 그건데요, 이게 현실이고 저는 거의 상당 부분 실상과 대표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는데 더 찾아볼 여지가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환경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어제 오후 국민권익위 주제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관련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절차 조정안 나온 것 아시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보도자료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이은주 위원 위원장님, 저……

○위원장 전해철 예, 한 2분 추가하세요.

○이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그 조정안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 의견을 청취하고 재보완 요구 내용을 구체화하라는 건데 환경부는 본 위원이 국정감사 때 지적한 그 확약서, 혹시 그대로 양양군에 재보완서 요구하셨습니까? 아니면 제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새롭게 재보완서를 요구하셨습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권익위에서 조정한 내용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지난 권익위원장 현장 방문 시에도 지속 협의한 그런 사항을 문서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제가 국감기간에 그 확약서가 환경영향평가 조사 방법을 후퇴시킨 확약서라고 지적한 것, 그 내용이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제 한 부분은, 그 확약서 관련된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현장 조정회의 할 때 그런 내용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

제는 어쨌든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재개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 조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원주청의 내용 또 양양군의 내용, 강원도의 그런 주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이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 환경영향평가 조사 방법이 대폭 완화시킨 대로, 확약서가 문제가 있다고 제가 국감 때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해서 새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겠다 이런 의견을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금 환경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권익위 조정에 따라서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충분히 보완해서 제출해 오면 저희가 이제 그다음 절차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해서 협의 방향을 이제 정하려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은주 위원 장관님, 제가 지난 환경부 종감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확약서 어떻게 누구 지시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사적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조사해서 조사 결과 11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장관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 부분 11월 말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아니, 지났네요. 이제 12월이네요. 어제까지 의원실에 보고된 게 없습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의원실……

○이은주 위원 확인해서 조치 결과 알려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제가 국감 때 지적한 내용이 이렇게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국감 이 건 할 필요 없는 거지요. 제가 제대로 따져 물을 겁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건 확인해서 제가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철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고용노동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데요.

지금 김진태발 레고랜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채무 2050억에 대한 채무불이행 선언을 하면서 그것의 여파로, 현재 정부에서 95조 신용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파가 금융시장에 충격을 줘서 부동산PF부터 해 가지고 모든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게 지금 일반 서민들의 주택대출까지 다 연이어서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의도 증권가의 대량 해고로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부동산PF, 리서치센터, 직접 수익을 내지 않는 지원부서를 중심으로. 사실 이게 김진태 국힘 지사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고용노동부차관한테 이게 계속 나비효과로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전파되어서 지금 근무자 250명 중에 30명이 해고통지됐고 7월, 6월에 고용되어서 12월 말까지 계약을 하니까 육칠 개월 만에 신입사원 다 해고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금융, 증권업 관련한 부분들이 보통 1년 단위 계약을 중심으로 수익을 가지고 연장, 연장의 구조이기 때문에 취약성도 있지만 실제로 18년부터 21년까지 수익을 냈던 금융사가 이런 단기적인 충격에 바로 그냥 해고로 문제를 전가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 상태에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서 바로잡지 않으면요 이걸 제가 보기에 금융위기…… IMF 때도 보면 금융시장에서 출발을 해서 전체적인 산업으로 연장이 되고 모든 것을 다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형태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큼니다.

관련하여 장관님, 간략하게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어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차관님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차관에게서 보고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사한 다른 소규모 증권·보험계도 있을 수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고, 대량 고용변동에 대해서는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법 위반 사례가 있는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더 챙겨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다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 가는 가운데 잘못된 시그널이 갈 경우에 이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김영진 위원 그것은, 경제적인 부분들은 잘 판단하시는데 이 부분으로 전화되어서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책임을 하는 것으로 가지 않게끔 적절하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경제시장에 계약관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너무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그리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두 번째는 MBC 부당노동행위 관련해서 구제 신청 및 신고에 대해서 서울지방노동청이 지금 조사를 하는데 특별근로감독을 이렇게 길게 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드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안이 2018년 3월 9일 MBC 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취하해서 판정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국감에서 제기했듯이 노동위원회에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 판정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제기했던 MBC 노동조합이 취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2021년에 다시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 관련한 특별근로감독 계속 주장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두 번 조사, 특별근로감독으로 이렇게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답변을 주시고요.

원칙대로 해 주세요. 이것 제가 보기에 특별감독이라는 수단을 부당하게 MBC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국힘과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그리고 실제로 MBC 관련한 사안은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될 문제예요. ‘이 XX’ 발언을 누가 했습니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본인의 잘못을, 유승민 전 대표가 얘기했듯이 본인이 솔직하게 사과하고 정리했으면 이렇게 비화되지 않는 문제를, 본인의 발언을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고 사과하지 않으면서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국세청은 세무조사, 검찰청은 또 조사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요 왜 죄 없는 MBC를 그렇게 때려잡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요 이게 앞으로 전체적으로 마치 언

론에 대해서 군기를 잡겠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전체적인 영향으로 가면 대한민국의 브랜드 파워를 엄청나게 하락시킵니다. 제가 보면 이후에 올해나 내년에 프리덤 하우스에서 국제적인 민주주의지수·언론지수가 2021년보다 2022·2023년이 급격하게 하락하면 그동안 대한민국이 가져 왔던 브랜드 파워 자체가 하락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실 엄청나게 큰 나비효과예요.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사람이 그 자유주의 핵심인 언론의 자유를 본인의 발언 잘못으로 나온 문제를 가지고 국세청·고용노동부·지검을 통해서 이렇게 조종하고 탄압하는 경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 윤 대통령의 시각이 1980년대 시각인 것 같아요. 전두환식 시각이에요, 지시하면 다 되는 것으로.

화물연대 파업도 비슷합니다. 화물연대는 노동자도 아니고 노동조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법파업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자율적인 노사협상을 행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동안에 해 왔고. 안전운임제 관련한 조정도 있었고 품목도 부분 부분 조정해 나가면서 유리그릇을 다루듯이 잘해서 파업이나 이런 걸로 가지 않고 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노사가 상생해 나가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면서 세계경제 충격을 완화해 나가야 되는데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분열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국민 간의 대립과 분쟁을 강화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저는 타당한 방침이 아니라고 봐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는 장관 사안이 아닌데……

MBC 특별근로감독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장관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말씀 취지 잘 알았습니다.

이 특감 기간이 통상 1~2주 조사를 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법리 검토하고 하는 데 시간이 한 2주 정도 걸려서 한 달 이상 걸립니다. 환노위에서 제기했던 한국와이퍼나 다른 사업장은 지금도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두 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법의 원칙적인 적용 관련해서 MBC 건은, 저는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아주 심각한 범죄고 임금

체불 또한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하지 않으면 공권력의 실효성이 없고 신뢰를 얻지 못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2021년, 금년 사건을 똑같은 잣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동안 노동부가, 2021년에 들어왔던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사라든가 감독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법원의 판결도 나왔고 해서 법대로 하는 것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은 대통령께서 MBC 발언하고 그런 거랑 관계없이 저희들이 그 전부터 죽 해 오던 것입니다. 그 점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법은 엄정하게 일관되게 누구에게도 치우침이 없이 가야 된다 이런 제가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전해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상주·문경 임이자 위원입니다.

노동부장관님, 우리 임금노동자 2000만 명 정도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임이자 위원 그중에 민노총이 한 100만 조금 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중에서 지금 손배·가압류 관련되어 있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 한 9개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래서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노조에 있는, 민노총을 위한 민노총에 의한……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민노총 방탄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먼저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단계구조의 하청구조를 개선하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반기를 들겠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누가 뭐라 해도, 지금 현재 노조법 제3조는 분명히 합법적인 파업을 했을 때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도 대법원에서 다 걸려 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 시점에서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려고 하는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야당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여소야대에서 밀어붙일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구요.

또 하나는 화물자동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가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래서 화물연대지요. 그래서 이들이 집단 운송 거부를 하는 것은 본인 마음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그렇지요.

○임이자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타인의 업무방해를 한다거나 새충을 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고 라이터를 던지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 부분은 분명한 불법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 맞지요? 그런 것은 엄중히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임이자 위원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시멘트가 레미콘이 총 중단됐을 때, 건설현장 중단되어 있지요, 지금? 거의 90% 중단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용직근로자들, 건설현장에서 하루하루 벌어 먹고살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이네들에 대해서도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아니겠어요, 생계의 위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헌법 제37조 2항에도 보면 모든 기본권은 다 중시되어야 되고 침해되어서는 아니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유보해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래서 화물자동차법 제14조에도 보면 업무개시명령에 불복종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 화물자동차가 처음에는 허가제였습니다.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임이자 위원 허가제이다 보니까, 그때는 굉장히 경기가 좋았고 또 우리 건설 경기도 막 붐이 일어나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건설 경기가 나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허가제로 하다 보니까 차량은 많고 일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못 살겠다 했던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정권 때에 화물자동차에다 허가제를 도입하면서 번호판을 부여하고 그 속에서 총량을 갖다가 수요·공급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도록 조절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번호판이 무기화되지 못하도록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 아니겠어요, 맞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런데 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 이 번호판이 다시금 무기화가 될 소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마치 윤석열 정부가 기본권을 무시하고 노조를 무시하고, 막 갖다들이대는 것 같은데 그건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법치는 분명히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화물자동차 운수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노조법 2조·3조가 야당의 합의 논리에 의해서 이 부분이 통과가 돼서 또 의장님이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대통령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지금까지 말씀…… 질문 다 하셨으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한 말들이 다

맞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임이자 위원 그래서 업무개시명령 관련해서도 이 부분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의 그분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득 보장과 이런 걸 해 줌으로 인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업무개시명령을 하는 건데 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을 뿐 또 이것을 갖다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얘기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불성설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몰제 관련해서도, 안전운임제 관련해서도 그만큼 과속·과적, 교통안전과 소득 보장 해 주는 데 있어서……

저도 2분 더 주십시오.

○위원장 전해철 추가하세요.

○임이자 위원 소득 보장을 해 줌에 있어서 사실은 교통안전에서는 오히려 전체 교통사고보다도 사망자가 더 늘어났고 교통사고 건수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 반면에 근로시간은 감축됐다는 조사가 있었고요. 임금은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한 24% 정도 증가가 됐고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110% 증가됐다고 분석한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관련돼 가지고는 큰 도움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지금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3년을 더 연장해서 한번 지켜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TF를 구성하자고 했으면 거기 들어와서 대화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아니면 안전운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임이자 위원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거기도 각 대표들이 다 들어와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주대표, 운송대표, 화주대표 또 공익 이렇게 들어와서 충분히 대화를 하면 될 부분인데 왜 우선 먼저 집단적 운송 거부부터 시작했느냐, 이 부분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노조법 2조·3조를 갖다가 막

개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손배·가압류를 면책을 주자. 이 모든 부분들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마치 어떤 하나의 소용돌이를 만들어서 정권 퇴진 운동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건 아닌 건지 저 혼자서 그렇게 의심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절차가 분명히 있고 거기 위원회가, 걸러지는 장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갖다가 혼탁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모든 경제를 마비시키는 부분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하실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노조법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그리고 노사관계의 원리로 봤을 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설정할 때는 견제와 균형, 균형 잡게 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노사 간의 힘의 대등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경제법적인 해법도 있고 노동법적 해법도 있는데 5인 미만 문제 그다음에 단협의 효력 확장,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실태조사에 기초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한 조직을 위한 방탄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다고 봅니다, 현재 실태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충분한 법 간 논의와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한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 우리가 직접적 물리적 힘의 행사에 의한 갈등적 노사관계를 대화와 타협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우려가 된다, 그래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화물연대 부분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볼 때 임이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과당경쟁과 경기적 요인이 있는데 역시 노무현 정부 때 이 부분에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운송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바로 끝나고…… 연쇄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어서 지금 당장 일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중대재해가 또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6월 달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지금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해철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현안질의 대강 마무리됐지요?

추가질의……

○이은주 위원 위원장님 하시고 추가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전해철 그러실래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한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데요.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에서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드리면요.

고용노동부차관, 어제 소위 참석했었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위원장 전해철 어제 소위 참석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장관께 정부 입장을 보고하고 참석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법안에 대한 저희 검토 내용은 장관님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해철 제가 알기로는 부처에서 소위에 차관이 참석할 때 모든 검토 내용을 장관께 다 보고하는 건 아니고 어느 경우에는 개략적인 내용만 하기도 하고 또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기도 합니다.

어제 건에 대해서 장관께 보고하고 왔냐고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말씀드린 대로 대략 방향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으니까.

○위원장 전해철 직접 보고 안 했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그러니까 실무에서 법안에 대한 검토 내용은 저나 장관님께 다 보고를 드리니까요. 보고를 드리는데 모든 세세한 내용을 다 보고를……

○위원장 전해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어제 법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차관은 일반론으로 하지 말고 내가 묻는 것에 구체적으로 대답하세요.

어제 법안 6건과 속칭 노란봉투법 그 법을 포함해서 그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장관께 보고했냐고 제가 질의하고 있다니까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검토 내용을 저는 보고드린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하지는 않았고요.

○위원장 전해철 알겠습니다.

차관이 앞으로 부처의 입장 그리고 장관께 보고한 내용으로 소위에 참석하는데 어제 소위 관련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았느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실무적인 이야기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차관도 앞으로 소위에 참석할 때는 의원님들이 발의한 또 논의한 것에 대해서 존중해서 정부 입장을 잘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철 장관, 방금 차관께 제가 질의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충분히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말고 거기에 논점이 한 열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열두 가지에 대해서 다 장관이 그 입장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게 한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취지를 제가 이해하면 원칙과 기초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와 우리 노동부 식구들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 결과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이 논의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다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발의 내용을 존중해서 대화에 임해라, 논의에 참여해라 하는 부분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소위원회 위원분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그런 논의하는 자율성과 필요한 재량·권한은 충분히 해야 됩니까마는 다만 그 과정에서 이게 전체냐 일부냐 등등에 대해서 너무 선입견을 갖거나 또 일도단락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할 수 있고 또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 등등에 대해서 좀 더 개별적,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차관이 소위에 출석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안과 관련해서 장관께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전 상임위 때 전용기 위원님 등이 MBC 특별근로감독의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보고를 했습니까?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보고를 다, 저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다……

○**위원장 전해철** 제가 이 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바로바로 제가……

○**위원장 전해철** 했나요, 뒤의 기조실장?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필** 예, 했습니다.

○**위원장 전해철** 근로감독 경과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필** 예.

○**위원장 전해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던 이유는 그 경과를 보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특별근로감독이 요건에 맞냐, 정부에서 답변을 하기에는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 또 여러 사회적인 그런 의식·인식 등에 기해서 했다고 할 때 이게 특별근로감독권을 발동할 만한 요건에 맞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세히 설명을 해야 된다고 했고.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는 또는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서 정부부처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요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막상 특별근로감독을 했더니 지금까지 해 왔던 조사 내지는 감독과 중복되더라, 이미 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애초부터 이것은 요건에 좀 안 맞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정당한 것같이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지금 노동조합 등 당사자의 특별근로감독 청원은 논외로 하고요. 다만 저희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이백구십구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기 때문에 국감이라든가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를 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특별근로감독 요건으로 상습 임금체불 그다음에 성희롱 그다음에 괴롭힘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처음에 문제 제기됐을 때와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해서 특별근로감독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해철** 어떤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문제 제기 말고 어떤 요건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그러니까……

○**위원장 전해철** 장관 이렇게 하시지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요건에 해당되는지하고 제가 조금은 세부적인 것에서, 장관이 일반론적으로 이렇게 답변하는 게 저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구체적인 요건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지금 현재 특별근로감독이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막상 현장에 가서 근로감독을 했더니 이전에 했던 것과 중복된다 그러면 그 요건이라든지, 꼭 일사부재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번에는 저와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철** 이은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는데 시간도 그러니까 3분에 한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장관님, 노동자들 파업 끝내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뭔지 성실하게 듣고 대화하고 교섭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이은주 위원** 장관님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실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파업 당시에 정부가 합의한 내용을 지키라는 겁니다.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품목 확대에 대해서 협의하고 노력하겠다고 정부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걸 180도 뒤집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어떻게……

업무개시명령 이것도 장관께서 제일 잘 아실 거예요. ILO 기본협약 87호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보호 협약 위반한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나라에다 뭐 제시했어요? 특수고용 운송노동자한테도 단결권 줘야 된다고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위반한 게 아니라 ILO 기본협약 중에 29호, 105호 강제노동 관련 협약도 위반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고용노동부가 국토부에도 모든 것들 말기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화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삼권 보장을 위해서 장관의 역할을 꼭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국감 때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이 제시했던 한국와이퍼, 오늘로 단식농성 25일 차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장관께서도

특별근로감독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국와이퍼 특별근로감독 진행 중인 것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지금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단식농성 25일 됐어요. 이 상황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한국와이퍼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텐소코리아도 특별근로감독해서 매각 과정에 불법 없었는지, 국감 때 내 얘기했는데 어떻게 우리 국감이 이렇게……

장관께서는 국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텐소코리아 특별근로감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씀도 없으십니까? 이 부분도 꼭 얘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난방안전주식회사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이은주 위원 여기 노동조합도 10월 20일부터 지금 40일째 파업 중입니다. 여기는 공기업인 지역난방공사가 100% 출자해서 만든 자회사예요. 공기업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돼요.

그런데 지역난방요금이 16% 인상됐는데 가뜰이나 부족한 안전인력을 20%나 줄인 것 이것 때문에 지금 파업 중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조합이 노동자대표가 참여하는 모·자회사 TF를 구성해서 인력운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실화계획을 세우자,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이 지역난방안전 노동조합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꼭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실 것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알겠습니다. 먼저 화물연대는 지금 화물연대와 정부 입장이 좀 다른데요, 합의사항을 파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추가적으로 논의를 계속하자라는 거잖아요.

○이은주 위원 논의를 계속 안 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논의를 하자는 건데 지금 화물연대 측에서는 논의를 안 했다고 하지만 정부 입장은 좀 다른데 지속적으로 해 왔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물리력을 동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부가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87호, 98호 위반이라고 저희는 보지 않고 그리고 권고가 구속력은 없는데 어쨌든 기본권이 확장돼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29호, 105호 위반에 대해서 105호는 저희들이 비준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29호 협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강제노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서 위반, 충돌의 소지가 없고요.

텐소코리아, 와이퍼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했는데 어쨌든 이 갈등이 고용안정이나 이렇게 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건 위원님께 수시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했는데,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보고 못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그다음에 지역난방주식회사 역시 공공기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해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현안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김영진	노웅래	박대수	우원식
윤건영	이수진(비)	이은주	이학영
임이자	전용기	전해철	지성호
진성준			

○청가 위원(2인)

김형동 이주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김원모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	관	한	화진

차	관	유	제	철
기	획	이	영	기
조	정			
실	장			
고	용			
노동부				
장	관	이	정	식
차	관	권	기	섭
기	획	박	종	필
조	정	김	성	호
실	장	이	정	한
고	용	류	경	희
정	책	권	태	성
실	장	박	준	호
노	동	김	은	철
정	책	임	영	미
산	업	권	창	준
안	전	양	정	열
보	건	최	태	호
본	부			
부	장			
직	업			
능	력			
정	책			
국	장			
정	책			
기	획			
관				
국	제			
제	협			
력	관			
고	용			
지	원			
정	책			
관				
노	사			
협	력			
정	책			
관				
근	로			
감	독			
정	책			
단	장			
산	재			
예	방			
감	독			
정	책			
관				

【보고사항】

○의안 회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7. 김형동 · 박성민 · 백종현 · 성일종 ·
하영제 · 임병헌 · 박대수 · 김희곤 · 배현진 ·
김용판 · 황보승희 의원 발의)

11월 18일 회부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8. 윤두현 · 권성동 · 金炳旭 · 김영선 ·
류성걸 · 박대수 · 백종현 · 양금희 · 윤창현 ·
이철규 · 정운천 · 최연숙 · 태영호 의원 발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8. 김영진 · 강준현 · 김경협 · 유정주 ·
이수진(비) · 이정문 · 이학영 · 전용기 · 진성준 ·
최종윤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1일 회부됨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2. 장철민 · 임종성 · 박상혁 · 김주영 ·
김수홍 · 한병도 · 오영환 · 강민정 · 황운하 ·
한정애 · 송옥주 · 오기형 · 이원욱 · 이용빈 ·
정춘숙 · 전해철 · 강훈식 · 조오섭 · 김윤덕 ·
정일영 · 박영순 · 김영배 · 진성준 · 신정훈 ·
허영 · 박홍근 · 전용기 · 우원식 · 한준호 ·
김영진 의원 발의)

11월 23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3. 김희재 · 기동민 · 김성환 · 김의겸 ·
김정호 · 김홍걸 · 류호정 · 민홍철 · 박주민 ·
신정훈 · 양경숙 · 전혜숙 · 정태호 의원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3. 신영대 · 김정호 · 박완주 · 김홍걸 ·
송갑석 · 이장섭 · 이용빈 · 홍기원 · 김성환 ·
임호선 · 문정복 · 전해철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4일 회부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4. 민형배 · 강민정 · 김승원 · 김의겸 ·
김정호 · 민병덕 · 송갑석 · 양정숙 · 윤미향 ·
이용빈 · 이용선 · 조오섭 의원 발의)

11월 25일 회부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5. 강준현 · 맹성규 · 박상혁 · 소병훈 ·
오영환 · 인재근 · 임종성 · 임호선 · 최혜영 ·
홍성국 의원 발의)

11월 28일 회부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8. 이명수 · 김수홍 · 김희곤 · 박성민 ·
성일종 · 엄태영 · 유경준 · 이채익 · 이태규 ·
조명희 · 태영호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8. 이명수 · 김수홍 · 김희곤 · 박성민 ·
성일종 · 엄태영 · 유경준 · 이채익 · 이태규 ·
조명희 · 태영호 의원 발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 발의)

(2022. 11. 28. 지성호 · 권명호 · 김미애 · 김승수 ·
김영식 · 박대수 · 박정하 · 서일준 · 양금희 ·
정우택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29일 회부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 발의)

(2022. 11. 29. 김승수 · 구자근 · 김예지 · 김용판 ·
김학용 · 박성민 · 박형수 · 정동만 · 최영희 ·
한무경 · 황보승희 의원 발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9. 김승수 · 황보승희 · 박성민 · 김학용 ·
박형수 · 구자근 · 김예지 · 정동만 · 한무경 ·
최영희 · 김용판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30일 회부됨

○보고서 제출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방안(결산 지적사항)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

(이상 2건 2022. 11. 21. 고용노동부장관 제출)